

'95년도 화순군의회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 활동내용중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 관련 중간보고서

1. 특위구성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 화순군의 상.하수도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화순군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축산폐수처리장 건설과
 - 광역상수도 시설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 시기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판단,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방안모색, 시설, 인원 등 관리방식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 향후 상.하수도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 실태 파악과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군내 간이상수도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강구, 부실한 상.하수도 관리시설 점검등을 통해
 - 군민 복지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상.하수도 체계수립 등 총체적인 물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2. 특위활동 기간 : 1995. 9. 13 ~ 11. 11 (60일간)
3. 특위구성 : 1995. 9. 13 제 37 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 문정조 의원 외 조영길, 홍이식, 문팔갑, 홍중희, 김성인, 정광수 의원 등 6명의 위원 선임
4. 조사대상
 -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포함)
 -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된 민간인 시설
 - 기타 특위에서 결의한 상.하수도 관련 시설

5. 조사방법

- 상수도 시설공사 현장 확인, 상수원 세부 조사
- 하수도 시설공사 현장확인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기초자료 조사
-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기초자료 조사
- 관외 및 현지 출장조사, 서류조사 병행 실시
- 조사대상 사업조서 징구
-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청취
- 필요시 주민공청회 실시

6. 추진경위

- 9월 16일 : 제 1차회의 - 집행부에 특위 조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자료 제출 요구
- 9월 19일 : 집행부로부터 기본자료 제출 받음
- 9월 20일 : 특위회의실에서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작업
축산폐수처리 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하기로 결정
- 9월 21일 : 도곡면 죽청리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예정지 현장, 능주면 양돈 단지, 화순읍 서태리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실태 둘러봄.
- 9월 22일 : 다지리 양돈단지, 서성리 양계단지 방문, 실태파악 및 현지 의견 청취
- 9월 26일 : 특위 간담회, 타 시도 축산폐수시설 현지견학 결의,
전북 축산폐수처리장 연구소, 김제시, 부여, 공주, 이천, 광주, 고양, 환경관리공단 등 방문키로 함.
- 9월 27일 :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방문 자료 수집
- 9월 28일 : 전북 정주, 김제시청, 부여군, 공주시청 등 방문, 자료수집, 현황청취

- 9월 29일 : 경기도 이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실태파악
경기도 고양군 경성축사를 방문 축산폐수처리시설 가동실태 확인
- 9월 30일 : 환경관리공단 방문 자료수집
- 10월 4일 : 특위 간담회, 자료검토
- 10월 5일 : 동면 운농리 양돈단지 방문, 실태 점검
- 10월 6일 : 화순읍 위생처리장 방문, 운영실태파악
한천, 춘양, 도암, 도곡면 양돈. 축산농가 방문, 실태파악
- 10월 9일 : 특위 2차회의, 자체 조사활동에 대한 질의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 공청회 개최 결정
- 10월 11일 : 특위 3차회의, 관계공무원 출석시켜 질의
- 10월 13일 : 도곡면사무소 회의실 주민공청회 실시
- 10월 18일 : 의견수렴 간담회
- 10월 22일 : 자료검토 간담회
- 10월 26일 : 의견교환 간담회
- 10월 29일 : 자료정리를 위한 간담회

7.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난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

- 1)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함으로써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의 부실로 인하여 실시설계의 부실우려가 많으며, 용역의뢰 후 마땅히 받아
야 할 중간보고 등을 한번도 받지않은채 장소를 확정하여 토지매입 등 사업
추진 자체가 처음부터 필요성 및 당위성에만 입각한 주먹구구식이라는 문제
점이 있음.
- 2) 용역설계 입찰에 있어서 전국에 72개 업체가 있고, 기술 및 공법의 도입

단계임을 감안, 지역제한을 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지역의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여 2개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므로써, 최신기술 및 공법을 도입하여 경제성있는 충실한 설계를 할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한편으로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3) 사업비중 타 시.도는 도비지원이 15 ~ 20%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지원 확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있어 재정부담이 크며, 실제 수혜자가 처리장 이하의 시.군이므로 도비지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향후 운영관리비도 전액 국비부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정압박 요인이 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렇지 못하면 이 사업추진은 시급히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여진다.
- 4)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시 전처리, 1차 처리만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한데 2차처리까지 하도록 되어있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극히 크므로 사업비용과 운영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이에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 5)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뇨.오수를 발생원에서 최종 처리시설까지의 수거 및 운반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내 대부분의 영세 축산농가가 수거에 필요한 자체 저류조 시설도 거의 갖추지 않고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수거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선행적으로 해결해야만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에도 허가, 신고대상 농가의 대부분이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있는 타 시군에 비해 (부여군 99.5%) 겨우 저류조시설만 갖추고 있거나 자연건조법이나 왕겨, 톱밥을 이용한 퇴비화방식 등 원시적이고 형식적인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폐수 문제의 주된 원인자가 되고 있는바, 환경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했을 경우 당장 이들 농가의 축산폐수

를 우선적으로 수거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 농가의 축산폐수를 우선 처리해줄때 이들의 지금까지의 위법 상태를 행정당국이 변칙적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문제와 함께, 아울러 소수 몇십 농가를 위해 자치단체가 수십여억원을 들여 연간 수억원의 비용을 발생 시켜가며 특혜성 사업을 한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소규모, 대규모 농가를 막론하고 소가 1일 35ℓ, 돼지가 1일 12ℓ의 폐수를 발생시키고 있는것을 감안할때 ℓ당 8 ~ 10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해가며 적극적으로 수거에 응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 경기도 이천군의 경우 : 축산농가의 호응도가 낮아 190t/1일 처리용량인데 20t 정도 처리하고 있음 (관리인력 20명 정도, 관리운영 비용 7~9억/년)

그러므로 자체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허가대상, 신고대상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효과적인 자체처리시설을 시급히 갖추도록하고, 영세 축산농가의 자체 저류시설이나 집단 저류시설을 갖추도록 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애당초 정책의 취지대로 다수의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영세 축산농가의 소득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6) 연계처리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되지 않고 있어 두 시설의 공기에 있어서 차이와 이에따른 축산폐수처리만 시설완공시 연계처리 불가능으로 인하여 완공후에도 상당기간 시설가동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아 건설시점이 적절하지 못하다.
- 7)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음으로써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해당지역 농산물에 대한 혐오지역 농산물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판로 및 가격에 있어서의 불이익, 침수지역 이동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의 대책 등이 전혀 강구되고 있지않아 해당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및 소요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 8) 국내 기술축적의 수준이 낮고 공법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실패의 위험성이 크다.

9. 금후 사업추진시 대안 및 요망사항

- 현지 지역여건과 주민여론 충분히 감안 수렴해야 한다.
- 관내 축산농가가 동면, 춘양, 능주, 한천, 도곡 등지에 밀집되어 있음을 감안, 대규모 집단 처리시설 1곳을 건설하는것 보다 지역별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차집관로 등을 통한 효과적인 수거와 조합구성 등을 통한 자율적인 운영방식의 도입 등으로 처리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 현재 우선적으로 문제가되는 대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용량에 20 ~ 25t 정도의 여유가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을 활용 시험 처리하면서 타 시군의 경험과 자체 처리결과를 수집 분석하면서 향후 효과적인 처리방법과 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 연계 처리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시설 완공후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처리기술이나 공법의 국내의 축적정도가 낮으므로 성급한 사업추진은 신중하게 제고되어야 한다.
- 위와같은 문제점을 감안, 보조금 등의 어려움 때문에 졸속하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사업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관내 허가대상,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 및 감독을 통해 이들에 인한 환경오염 파괴를 막을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오염 파괴를 막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자체 수거 및 집단 수거조 설치지원 등 수거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 사업비에 있어서 도비지원, 운영관리비의 국·도비 지원이 확보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